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완화〉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04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9. 8.
3. 회 부 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닭과 관련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함.

그런데 2018년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평방미터에서 0.075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음. 또한,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중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에 관한 기준을 마리당 0.05제곱미터로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물 등에 필요한 매물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후단 신설>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 ⑧ (생략)	4. ----- ----- ----- 이 경우,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을 생산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거나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을 말한다)의 케이지 시설의 마리당 가축사육 시설 면적은 0.05제곱미터로 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현행	개정안
	행 당시 축산업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과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자¹⁾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은 축종별 사육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케이지 사육 산란계의 경우 마리당 0.075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음(「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이 기준은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²⁾ 이후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월)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 및 닭진드기 감염 등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전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상향('18.9월)된 것임.

1)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축산법 시행령」 제13조)
2) '17.8월 국내산 친환경 농가 계란에서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과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비펜트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출하가 중단됨. 1,239곳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52개(4%) 농장에서 미허용 또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음.

[닭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축산법 시행령 별표1)]

구 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산란계	케이지	0.075m ² /마리	
	평사, 고상식	9마리/m ²	고상식 시설은 종계만 적용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² /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고상식		39kg/m ²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m ²
		자연환기	33kg/m ²
	케이지		0.046m ² /마리

주: 성계(18주령 이상) 1마리 = 육성계(3~18주령) 2마리 =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

다만, 시행령 개정 당시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2018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7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부터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하였고,³⁾ 2025년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⁴⁾ 법 적용이 재차 유예된 상태임.

개정안은 '18.9월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되었던 케이지 사육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면적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마리당 0.05제곱미터로 완화하려는 것임.

3) 부칙 <대통령령 제29041호, 2018. 7.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4)가) 종계·산란계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면적 개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9.8.)

이는 현행 시행령상 기준이 계속 적용될 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는 강화된 사육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일 면적에서 사육하는 산란계 마릿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계란 공급이 감소하면 계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2023년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육면적 개정으로 인해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14.0~33.3% 감소하고, 계란 가격은 24.0~57.0%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⁵⁾

또한, 전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⁶⁾ 위와 같이 계란 공급이 감소할 경우 백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계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계란 기반 백신 공급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시행령 개정 이후 7년이 지남에 따라 현행 사육면적기준에 맞추어 상당수 농가가 시설 개선을 진행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산란계 농가 중 689개소(41.7%)는 여전히 0.05m²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958개소(57.2%)는 시행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국립축산과학원,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파급효과 및 국외사례 조사, 2023.11.

6) 매일경제(2020.10.30.), <<https://www.mk.co.kr/news/it/9585306>>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사육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이미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투자를 완료한 신규 농장과의 형평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산란계 사육 현황('25.7월 기준)]

(단위: 개, 천수, %)

구 분	방사 (1번)	평사 (2번)	0.075m ² 케이지(3번)	0.05m ² 케이지(4번)	
				직립형	A형
농가수	194	600	164	553	145
농가비중	11.6	35.8	9.8	33.0	8.7
사육마릿수	783	9,406	14,033	52,282	4,852
사육마리 비중	0.9	11.4	17.1	63.4	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EU에서는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확장형(enriched) 케이지⁷⁾를 도입하였으며, 일부 EU 회원국(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은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⁸⁾

참고로 이와 같은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동물자유연대는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7) 면적 기준은 0.075m²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케이지 내 구비시설 요건에서 차이가 있음.

8) 참고자료: 산란계 사육시설 종류

한편, 개정안에 따라 산란계 사육면적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현행 법령이 산란계사육업과 백신산란계사육업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란계사육업’으로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용어로서 ‘케이지’를 명확히 정의하며,⁹⁾ 법령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축산법」 제22조제4항¹⁰⁾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사육업¹¹⁾에 대해서도 산란계 케이지 사육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9)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10)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11) 허가 대상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과 말 등 일부 가축 사육업은 제외

참 고

산란계 사육시설 종류

시설 구분	설 명	관련 사진
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	- 직립식 또는 A형 케이지 -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음 - 동물복지 수준이 가장 낮음 - <u>EU에서는 '12년부터 사용 금지</u>	
		
확장형 케이지 (Enriched cage)	- 기존의 케이지에 산란계의 동물복지에 필요한 난상, 깔짚, 햇대, 발톱마모장치 등이 갖추어진 형태 - 동물복지에 대한 논란 존재 - <u>EU에서는 '24년부터 사용 금지</u>	
개방형 (다단식) 케이지 (Aviary cage)	- 개방형으로 닭들이 간혀있지 않은 사육시설 - 닭에 필요한 난상, 햇대 등이 포함 - 집란, 급이, 계분수집이 자동화 - <u>EU 및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포함</u>	
평사 (Barns)	- 깔짚형 실내평사사육(육계사 형태) - 계사내부에 난상, 햇대등이 포함 - 국내 동물복지 인증 대다수농가 형태 - <u>EU 및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포함</u>	
방사 (Free range)	- 계사 외부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 -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형태 - 대부분의 유기산란계 형태 -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발생 가능성 - <u>EU 및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포함</u>	

자료: 농림축산식품부